#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60

발의연월일: 2025. 1. 13.

발 의 자:이훈기・김정호・맹성규

이병진 • 안태준 • 민병덕

문진석 • 용혜인 • 김태선

허종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미디어의 역할이 단순한 정보전달이나 여론형 성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락 기능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 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속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방송에 비견될 정도로 커져 있는 상황임.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미디어의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교육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디지털미디어교육"을 디지털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를 통하여 전 달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 민주적 소통능 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 조).
-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디지털미디어교 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송 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 조).
-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소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 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미디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중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도구·수단·행위 또는 그내용 전반을 말하며 정보 형태를 불문한다.
- 2. "디지털미디어교육"이란 디지털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 민주적 소통 능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3. "디지털미디어교육시설"이란 디지털미디어교육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디지털미디어 관련 사업자"란 디지털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5. "시행기관"이란 디지털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디지털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디지털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디지털미디어교육은 국민이 디지털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③ 디지털미디어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미디어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미디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디지털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

- 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디지털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
  - 2.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능력, 사회참여 ·소통능력 및 디지털미디어 유리에 관한 사항
  - 3.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디지털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 6.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①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미디어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3. 디지털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소관 조정 및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 4. 디지털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5.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교육부차관
- 2.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명
-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추천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한다)
- 2.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 ⑤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8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5.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

- 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미디어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디지털미디어 관련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디지털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미디어교육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 관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제14조(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시행기관은 국민에 게 다양한 디지털미디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디지털미디어교육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를 지원할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또는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